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9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윤준병 · 어기구
정준호 · 서영교 · 서영석
조인철 · 한민수 · 허영
노종면 · 이용우 · 이해식
최혁진 · 진성준 · 김영환
서삼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. 4·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%를 감면받고 있음.

그러나, 4·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(44.2%)이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. 또한, 4·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, 4·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2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4조제1항제13호의 4·19혁명공로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	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 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제4조제1항제13호의 4 · 1</u>
	<u>9혁명공로자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